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원 등의 교육환경의 정화와 관련하여 유해업소 제외시설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범위를 타법 시행령 조문 인용으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함

아울러, 별표 3의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에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자격조건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원 등의 교육환경 정화와 관련해 유해업소 제외시설로 추가 되는 ‘휴게음식점업’의 허용되는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인용 (안 제4조의2 신설)
- 나.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 추가(안 제12조의2제1항)

다. 별표 3에 10.의 자격기준란 제10호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7.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허용되는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한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에 10.의 자격기준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원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계열을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3.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 계열을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1. 2. (생략) ② (생략)	<u>제4조의2(허용되는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한한다.</u>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 ----- -----<u>. 다만,</u> <u>제3조의3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10. 학원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계열을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 계열을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부	
연 락 처	(044) 203 - 6386